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박대출 · 이상희
김은혜 · 안철수 · 곽규택
김예지 · 김미애 · 서명옥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4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4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